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8
2026.10.12.





한국 겨냥 수입규제 미국·인도·튀르키예가 절반

[이주의 초점]
2026년 상반기 24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1건 증가… 2023년 이후 증가세 (4p)

[위클리뉴스]
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제재 면제
관세청 외환검사권 확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美, 최종 정산된 상호관세도 환급 시작 (8p)

[오피니언: 베트남 통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 10년 넘은 기계도 수입 가능 (13p)

[판례 동향]
하드웨어 수입 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결합거래의 관세평가 처리 (22p)

[품목분류 동향]
'기타의 당vs.맥아당시럽' 맥아당이 주성분인 당시럽의 HS Code (42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0월 12일(통권 제2198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한국 겨냥 수입규제, 미국·인도·튀르키예가 절반

08 Weekly News

오피니언

13 **베트남 통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 ··· 10년 넘어도 가능

이여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20 **질의응답사례**

수입신고한 물품 폐기 시 절차

판례동향

22 **관세판례해설**

하드웨어 수입 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결합거래의 관세평가 처리

최천식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 공동대표

품목분류동향

42 **세번 바로잡기**

맥아당이 주성분인 당시럽의 HS Code

이영주 중앙관세분석소

한국 겨냥 수입규제, 미국·인도·튀르키예가 절반

2026년 상반기 241건···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2026년 상반기 2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규제의 45.2%가 미국·인도·튀르키예에서 시행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9월 발표한 '2026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26개국이다. 규제 건수는 2025년 하반기(230건)보다 11건 증가한 것으로 2023년부터 꾸준히 늘어 사상 최고치였던 2020년 하반기 기록(229건)을 넘어섰다.

2026년 상반기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각각 14건, ▲중국 13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3건(46.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026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조치 사항

유형별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우회수출	합계
	166(22)	53(21)	13(1)	9(1)	241(45)
국가별	미국	인도	튀르키예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기타
	54(3)	28(11)	27(6)	각 14(5)*	104(20)
품목별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기타
	113(10)	37(10)	35(13)	18(1)	38(11)

* 조사중 5건은 모두 마다가스카르에 해당됨.

( )는 조사중 건수(출처: KOTRA '2026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미국 54건으로 수입규제 최다··· 철강·금속이 66%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54건(조사 중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목 중 철강·금속이 36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최근 최종판정 사례로는 올해 5월 19일 확정된 에폭시수지 반덤핑·상계관세가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대만산에 대해 확정됐다. 미국의 54건에

는 신규 조사뿐 아니라 과거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일몰재심을 거쳐 유지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이후 5년마다 일몰재심을 시행하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덤핑·보조금과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2026년 상반기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주요 현황

유형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합계
	38	12	2	2	54
품목별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타
	36	5	4	4	2	3

수입규제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와 무역확장법에 따른 232조 품목관세를 시행하는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추세다.

인도 28건 중 반덤핑 25건··· 화학 규제 가장 많아

인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다. 2026년 상반기 수입규제는 28건으로 2025년 하반기보다 4건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주요 현황

유형별	반덤핑	세이프가드	합계
	25	3	28
품목별	화학	플라스틱·고무	철강·금속	기계	기타
	16	5	3	1	3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16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2026년 상반기에는 페놀(Phenol)·아세톤(Acetone)·특정 산화방지제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소다회(Soda Ash)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됐고, 냉간압연 방향성 전기강판·비정질 금속과 감열지[1]도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올랐다. 상반기 신규 조사만 6건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KOTRA는 2023년 8월 '인도 반덤핑 관세 부과 체계와 최근 규제동향'에서 한국을 중국·EU·대만·일본과 함께 인도의 주요 반덤핑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1) 감열지(Thermal Paper or Thermal Sensitive Paper): 열에 민감한 물질을 코팅해 열을 가했을 때 기록을 남기는 특수 용지

인도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는 본지에 “인도의 무역구제총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때 해외 제조자·수출자는 거래·원가·판매 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기업은 회사별 덤핑마진을 산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품목을 수출하더라도 조사 참여 여부와 소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 27건··· 산업 보호 위해 수입규제 확대

튀르키예의 對韓 수입규제는 2026년 상반기 27건(조사중 6건)으로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2025년 하반기보다 1건 늘었다.

2026년 상반기 튀르키예의 對韓 수입규제 주요 현황

유형별	반덤핑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합계
	13	11	3	27
품목별	**철강·금속**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화학**	**기타**
	8	7	5	3	4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은 튀르키예가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에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올해 6월 한국산에는 기업별 10.48~28.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KOTRA는 철강·화학·플라스틱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튀르키예 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신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올해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자국의 탄소집약 산업을 보호하고자 수입관리와 무역구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마다가스카르(14건)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세이프가드가 다수여서 한국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캐나다(14건)는 전기전자(2건)를 제외하면 모두 철강·금속의 반덤핑·상계관세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산 우회수입에 대응하고자 철강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를 시행 중이다.

2020년 이후 한국 대상 수입규제 동향

2020년대 들어 對韓 수입규제는 등락을 거듭했다. 2020년 하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보호무역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며 2022년 하반기 191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對韓 수입규제 추이(2020년 상반기~2026년 상반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체	226	229	225	210	208	191	201	208	214	216	218	230	241
조사중	48	49	41	20	16	10	19	27	29	33	31	31	45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전 기간 전체의 70% 안팎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절반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 기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인도는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2024년 이후 20건대로 올라선 뒤 인도를 바짝 뒤쫓고 있다.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추이(2020년 상반기~2026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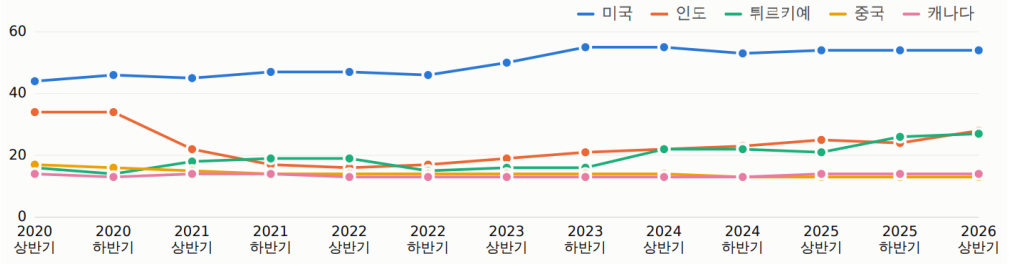

KOTRA 2020~2026년 수입규제 동향 자료를 토대로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현 변호사는 본지 제2183호(2026.6.15. 발행)에 최근 무역구제 동향을 전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상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나라[2]"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1~2년 새 수입규제 주체국이 다양해지고 한국산 제품을 직접 표적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며, 원가·판매 자료와 원료별 원산지 등을 상시 정비하고 국내외 산업의 반덤핑 등 제소 소식을 모니터링할 것을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2) 1995년부터 2024년까지 509건의 반덤핑 피소를 기록해 중국(1,780건)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제재 면제

2028년 3월까지··· 영국계 운송·보험 이용 가능

영국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제재를 2028년 3월까지 면제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면제를 발표한 것에 이어 영국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가 10월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10월 1일(현지시간)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 수입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LNG 수입 시 영국 기업의 운송과 보험 관련 서비스를 계약 종료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사할린Ⅱ 프로젝트로 연간 150만톤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다.

EU는 2025년 10월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된 EU 기업의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고 여기에 영국까지 동참하며 사할린Ⅱ LNG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수송선박의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맡고 있지만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에는 EU와 영국에 소재한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측에 제재 에외를 요청해왔다.

EU 이사회는 2026년 7월 23일(현지시간)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사할린Ⅱ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 끝에 영국에서도 제재를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때까지 LNG 도입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 김다솔 기자 |

“관세청 외환검사권 확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입법예고

관세청이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 별도의 용역·자본거래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유된다.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개정된「외국환거래법」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현재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 대상은 수출입거래와 이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으로 제한된다. 최근 외환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검사 기관 간 관할 모호, 사건 이첩에 따른 행정 비용과 검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거래 검사 중 위반 혐의를 인지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도 관세청이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외국환거래 검사 대상 관련「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전후

현행	개정
■ 제35조(검사 등)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 <후략>	■ 제35조(검사 등)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다목에 따른 검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검사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이번 개정안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리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도 포함됐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절차도 규정해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총 6개 업종이 된다. 해외지급결제업 검사는 금융감독원,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환전업 등록요건과 제재도 강화한다. 다른 비은행 업종 대비 진입요건이 부재해 외국환 매입금액 실적이 없는 부실 환전업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한 차례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70%에서 100%까지 높아진다. 재경부는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처리 결과 통보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재경부는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일(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세청 외환검사권	수출입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용역·자본거래 위반도 관세청이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제35조
가상자산 이전업무 구체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 신설, 등록요건과 거래내역 보고, 검사·감독 및 제재 기준 마련	제9조의3, 제17조의5·6, 제35조 등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소액해외송금업 등 관련 외국환업무를 6개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등록·업무 기준 정비	제15조의2~4, 제16조 등
환전업 관리 강화	인적·물적 등록요건 신설, 등록취소 기준과 과징금 상한 강화	제15조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조문 정비, 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	제21조의10·제21조의12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호조세··· 도착액 역대 1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에 힘입어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관한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억 달러, 도착은 30.6% 증가한 148억 7,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제조업 투자 도착액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하고 정보통신 분야 투자는 신고·도착 모두 크게 증가했다.

FDI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신고 금액을 의미하며, 도착은 국내에 실제 송금 완료된 금액을 뜻한다.

2026년 상반기 누적 FDI 신고는 229억달러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3위를 달성했다. 업종별로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279.5%)과 서비스업(27.8%)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6년 3분기 누적 FDI 도착은 148억 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62억 5,000만달러, 110.6%)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화학공학은 47억 6,000만달러로 256.6% 늘었고, 비금속광물제품(3억 9,000만달러)도 24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6년 3분기 누적 FDI 신고&도착 추이(2022~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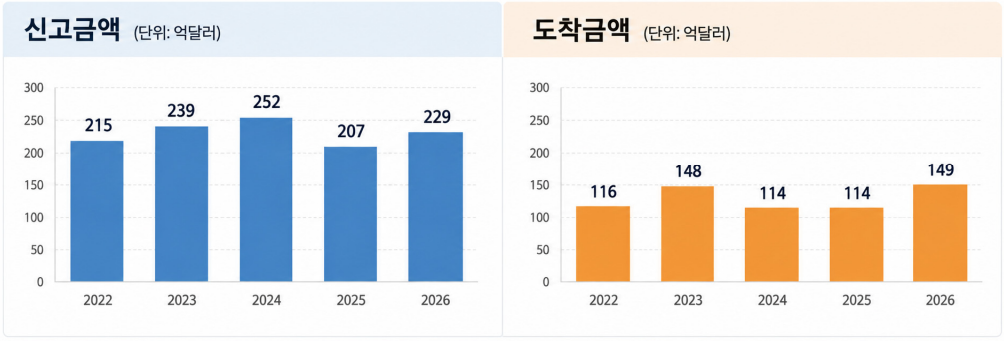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졌다. 미국의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66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9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미국 기업 4곳이 총 2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는 등 투자 유입 사례도 이어졌다.

EU와 일본은 실제 국내에 유입된 투자액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EU의 투자 도착은 48억 4,000만달러로 93.7% 증가했으며, 일본도 63% 늘어난 7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투자 도착(2억 6,000만달러)은 41.5% 감소했다. | 김다솔 기자 |

美, 최종정산된 수입신고 상호관세도 환급 시작

미국이 IEEPA[1]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의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종정산이 끝난 수입신고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부터 실제 환급이 시작됐다.

미국 로펌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는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10월 6일 CAPE 3단계[2]를 가동했다고 전했다. CAPE는 IEEPA 관세 관련 환급 신청을 ACE 포털[3]에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BP는 환급 건을 CAPE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3단계는 최종정산이 완료돼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정산 후 80일 이상 지난 통관 건은 미국 CIT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후 CIT의 재정산 명령에 따라 CBP가 해당 통관 건을 다시 정산했지만, 이러한 절차로 환급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CAPE 3단계 가동으로 **CIT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 가운데 7월 30일까지 수입자 정보(IOR, Importer of Record)를 제출하고 CBP나 법무부로부터 별도 사항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수입업체는 ACE 포털에서 환급 대상 통관 건을 확인하고 CAPE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CAPE 3단계가 CIT 재정산 명령을 받은 통관 건이 법적 절차에서 나아가 실제 재정산과 환급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을 검토하는 수입업체는 통관별로 정산 여부와 정산일, 납부한 IEEPA 관세액, CIT 재정산 명령 여부, IOR 제출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정산된 건은 CIT 소송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환급 예상액이 적으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환급액보다 클 수 있어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환급 규모가 큰 수입업체는 관련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 김성은 기자 |

---

1)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2) 관세환급 전산절차 통합 관리·처리 시스템(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으로 1단계는 미정산·정산 완료 후 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건, 2단계는 최종정산되기 전과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건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3) 미국의 전자통관 포털(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 10년 넘어도 가능

2026년 9월 시행된 수입규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이 여 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Ⅰ.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생산설비의 교체·증설 또는 해외 생산설비 이전을 위해 해외에서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 본사나 해외 공장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 생산설비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국내 기계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산업용 기계·설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현지 컨설팅기관 아클라임베트남(Acclime Vietnam)이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의 기계·기구 및 부속품 수입액은 약 610억 2,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3%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수입품목에 올랐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공급국은 중국·일본·한국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높은 기계 수입 의존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중심의 제조업 구조와도 관련 있다. 베트남 국가통계청(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이 6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전체 수출의 79.8%를 FDI 기업이 담당했다. FDI 기업이 기계·설비와 원부자재를 수입해 조립·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 기계가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인 만큼 품질·안전 관리가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떠올랐다. 베트남정부는 중고기계·설비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연식과 안전성, 에너지 효율 및 환경 관련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 4월 총리결정 제18/2019/QD-TTg호를 제정해 같은 해 6월 15일부터 중고기계·설비와 기술라인의 수입 요건을 강화했다.

2026년 9월 5일에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중고기계 관련 시행규칙[Circular No. 56/2026/TT-BKHCN(이하 'Circular 56')]을 공포·시행했다. 해당 규정에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중고기계, 설비 및 기술라인에 대한 적용 범위, 수입요건, 검사 및 통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번 규정에서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부분은 10년 이하 중고기계·설비의 수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을 초과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Ⅱ. 새로운 규정은 어떤 기계에 적용되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Circular 56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다.

이 규정은 HS Code 제84류·제85류에 해당하는 중고기계·설비·기술라인으로, 베트남 내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아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단순 경유·환적·보세구역 입고, 임시수입·재수출
② 외국 상인과의 수리·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따른 반입
③ 수출가공기업(EPZ, Export Processing Zone) 간 거래 또는 비관세구역 기업 간 매매, 수출가공기업의 내수 매각
④ 연구개발·기술개발용(국내 미생산 품목), 안보·국방 목적
⑤ 고위험 제품·물품 목록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⑥ 타 부처가 별도의 전문 관리 규정을 둔 전문 분야 기계·설비

이 중에서도 '타 부처 전문관리 분야'와 '외국 상인과의 유지보수 계약'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다. "중고기계면 무조건 Circular 56을 따르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해당 품목을 전담 관리하는 다른 규정(의료·국방·식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Ⅲ. 중고기계 수입, 원칙적으로는 '10년 이하'

Circular 56에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중고기계·설비의 연식이다.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중고기계·설비는 원칙적으로 연식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연식**은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제조연도(년)부터 베트남 수입연도(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입연도란 물품이 베트남 국경에 도착한 연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제조된 기계를 2026년에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연식은 8년으로 계산된다. 반면 2015년에 제조된 기계를 2026년에 수입한다면 11년이 돼 일반적으로 수입 가능한 10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베트남에서 중고기계 수입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계약일이나 구매일이 아니라 제조연도와 실제 베트남 국경 도착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연식을 확인해야 한다. 선적이 지연돼 다음 해에 도착하면 연식이 1년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스케줄 관리도 연식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중고기계에 일률적으로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Circular 56의 부록 I에는 일부 분야 및 기계·설비에 대해 별도의 연식 기준이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목별 수입허용 연식

분야	대상(HS Code 등)	허용 연식
기계공업(기계공구)	압연기(플랫 롤러 방식), 주조기, 금속압연기, 머시닝센터, 선반, 드릴, 연삭기, 대패, 프레스 등	20년
제지·펄프	기계·설비(HS 제8439·8440·8441호)	20년
목재 가공	일부 목재 가공·프레스·처리 기계	20년
목재 가공·제조	목재·펄프·제지용 설비(HS 제8419.35호)	15년

주요 품목만 요약한 것으로, 세부 연식 기준은 HS Code·용도에 따라 Circular 56 부록 I에서 확인 필요

따라서 실제 수입 전에는 '10년 이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HS Code와 기계의 구체적인 용도 및 분야를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이 부록 I에서 별도의 연식 기준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10년 넘은 중고기계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Circular 56 제10조는 연식 기준을 초과하는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년이 초과된 기계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규정은 **베트남에서 이미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연식 기준을 초과한 기계·설비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단순히 오래된 기계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흔히 '**85%·15% 요건**'이라고 불리는 요건이다. 10년 초과 중고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① 잔존 생산능력 또는 효율이 설계 생산능력 또는 설계 효율의 85% 이상일 것
② 원재료·자재 및 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소비량을 15% 초과하지 않을 것
※ 예를 들어 설계상 생산능력이 시간당 1,000개인 기계라면 잔존 생산능력이 최소 8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85%·15%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10년 초과 기계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10년 초과 기계에 대한 별도의 수입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이며, 기업은 **잔존 생산능력·효율과 소비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 등을 구비해 과학기술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10년 초과 기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고기계 수입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존 체제에서 이미 처리된 건에 대한 조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Circular 56 시행 전에 결정 제18/2019/QĐ-TTg호(28/2022/QĐ-TTg 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증명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검사를 받아둔 물량은 서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증명서로 통관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Ⅴ. 중고 '기계'와 '기술라인'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Circular 56을 적용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개별 중고기계·설비와 중고 기술라인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고 기술라인**은 제5조에서 **별도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라인의 수입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라인은 안전,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기준(QCVN)[1]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QCVN이 없는 경우에는 TCVN[2] 또는 규정에서 인정하는 G7 국가나 한국의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잔존 생산능력 또는 효율이 설계 대비 85% 이상일 것
③ 원재료·자재·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기술이 베트남의 기술이전 제한·금지 기술 목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목록은 시행령 제101/2026/NĐ-CP호에 규정돼 있다.
⑤ 해당 기술이 OECD 국가 내 최소 3개 생산기지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

따라서 기업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여러 대의 중고기계를 한꺼번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계를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공정상 하나의 기술라인을 구성하는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라인 전체를 이전하는 프로젝트라면 기계 한 대의 연식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설비들이 하나의 기술라인으로 판단되는지, 기술라인에 적용되는 요건(위 수입요건 중 ⑤번)을 충족할 수 있는지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Ⅵ. 통관의 핵심은 '검사증명서'와 사전 증빙 준비

중고기계 수입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검사 및 증빙서류다. Circular 56 제9조에 따르면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기업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서류 외에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한다.

검사증명서에는 통상적으로 기계명, 제조연도, 브랜드, 제조번호, 모델(기종), 제조국, 제조자명, 검사 시점·장소, 검사 당시 상태, 적용된 기술기준(QCVN·TCVN 또는 G7·한국 국가표준)과 검사방법 등이 기재된다. 따라서 제조연도, 모델명, 시리얼번호, 제조자, 제조국, 기술사양 및 생산능력 등은 검사와 수입요건 판단에 직접 활용되므로, 해외 공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관 시점에 검사증명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서비스를 등록한 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관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검사증명서가 제6조의 수입기준 충족을 결론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통관을 진행한다. 이는 통관 전 사전 검토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사 결과

1) QCVN(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베트남의 국가기술규정
2) TCVN(Tiêu chuẩn Việt Nam): 제품·서비스 등의 품질·기술적 특성을 규정한 국가표준을 의미

해당 기계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벌 대상이 되고, 반송·보관료·통관 지연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기계 수입 시 필요한 증빙서류

기업등록증 (기업 직인 날인 사본)	다만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 정보를 직접 확인해 대체하고, 확인이 어렵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만 기업이 제출한다. 위탁수입(임가공 위탁)의 경우 위탁수입문서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제조자 확인서 또는 검사증명서	G7 국가 또는 한국에서 제조된 기계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자 확인서 원본(영사인증+베트남어 번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확인서는 기계의 제조연도 및 제조기준이 제6조의 수입기준(연식·안전·에너지·환경)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반면 ▲G7·한국 제조이지만 제조자 확인서가 없는 경우, ▲G7·한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기계 수입 시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 검사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 선적 전에 필요한 서류와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Ⅶ. 실제 중고기계 수입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번 규정은 베트남에 중고기계·설비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연식 기준(10년)을 초과한 기계**도 부록 I에 따라 분야별로 **15~20년까지 수입이 허용**될 수 있으며, 그마저 초과하는 기계도 **일정 요건(잔존 생산능력 85%·원재료 등 소비량 15%)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를 통해 수입할 수 있어, 기존에 연식 제한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중고 생산설비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다만 10년 초과 기계·설비는 잔존 생산능력 또는 효율 85% 이상, 원재료·자재 및 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검사 및 과학기술부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제조연도와 제품 사양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효율, 에너지·원재료 소비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와 **제조자 확인서**(영사인증·베트남어 번역본 포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G7 국가나 한국 기준으로 제조된 설비도 확인서에 제6조의 기술기준(QCVN/TCVN 또는 G7·한국 표준) 충족 여부가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사용하던 생산설비를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중고설비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및 선적 전에 HS Code, 적용범위·제외 여부, 부록 I

연식, 기술기준, 검사 및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선적 후 확인하면 통관 지연, 보관료 및 반송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증명서는 경과 조치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규정은 한국 수출기업에 중고기계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적 전 수입 요건 검토와 관련 증빙의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Ⅷ. 이번 규정이 기업에 시사하는 점

1) 규제 체계가 '결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전환된 것 자체가 신호다. 기존 총리 결정 제18/2019호 체제를 시행규칙(Circular)이 대체하고, 근거가 되는 시행령도 시행령 제69/2018호에서 시행령 제292/2026호로 전환되면서 관련 수입요건과 검사·허가 절차가 새롭게 정비됐다. 즉 이번 개정은 '기준 완화'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세대교체다. 앞으로도 이 부령 체계로 개정·보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은 시행 초기인 지금 시점에 자사 서류 기준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이번 개정은 한국산 설비에 우호적인 구조다. 관련 QCVN이 없는 경우 TCVN 또는 G7·한국 국가표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한국에서 제조·사용된 설비를 이전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제조자 확인서가 있으면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확인서가 영사인증·베트남어 번역을 갖추고 안전·에너지·환경 기준(제6조) 충족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3) 수출기회는 넓어졌지만 '조건부'다. 부록 I의 분야별 연식(15~20년)과 10년 초과 예외절차(잔존 생산능력 85%·원재료 등 소비량 15% 요건)로 문이 넓어진 것은 분명 호재다. 그러나 그만큼 검사·심사·승인 절차가 추가됐으므로, 실질적인 관건은 생산능력·효율·소비량을 입증할 기술자료와 검사증명서를 선적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다.

4) 무엇보다 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가격과 연식만으로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HS Code, 적용범위·적용 제외 여부, 부록 I 연식, 기술라인 해당 여부를 수출계약 체결 전에 쌍방이 합의·확인하는 절차가 수출·수입 양측 모두의 리스크 관리가 됐다.[3)]

3) 출처 및 참고자료: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 Tạp chí Kinh tế - Tài chính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수입신고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신고 취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폐기(폐기완료 보고)**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폐기신청 및 승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대상과 신규인증 대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제3항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돼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인 경우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수입요건

동물 의료에 쓰이는 엑스레이 기기의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제9022.14-2000호에 분류되는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기기 중 수의과용 기기'를 수입할 경우 다음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 **[수입승인서(방사성물질등)]** 「**원자력안전법**」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하드웨어 수입 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결합거래의 관세평가 처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적부심사 2025-16(2025.12.31.) 대상 결정

최 천 식 |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 공동대표

Ⅰ. 머리말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양상은 과거 물리적 매체(CD, USB 등)를 통한 공급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키 발급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전용 서버 및 고성능 컴퓨팅 장비의 경우, 하드웨어 단독으로는 고유의 연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특화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및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는 전통적인 물품 중심의 관세평가 체계에 새로운 법적·실무적 과제를 던진다.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 대상은 수입되는 유체물에 국한되므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무형의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입신고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수입 하드웨어의 필수적 구동 요소이거나 수출자와의 하드웨어 매매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판매조건으로 얽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하드웨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관세평가상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번 판례해설의 대상결정인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적부심사 2025-16, 2025.12.31.)은 미국 수출자로부터 AI 컴퓨터 서버를 수입하는 총판업체인 청구법인이 하드웨어와 함께 일괄 결제한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대가 및 서포트서비스(하자보증 및 비회수 옵션 비용) 대가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표적 사례다. 세관장과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의 범용성 및 구매선택권 유무, 판매조건성 그리고 하자보증비용 성격과 공제 요소(수입 후 기술지원) 해당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호에서는 적부심 결정문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을 바탕으로 **무형의 소프트웨어 및 사후 지원 서비스 대가가 수입 하드웨어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회사로서 미국 수출자의 국내 총판매업체인 A사가 수입하는 AI 컴퓨터 등을 구매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파트너사(국내 영업사) 지위를 일정 기간 영위하다가 2021년 미국 수출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A사와 함께 국내 총판업체로서 수출자로부터 AI 컴퓨터 서버인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등을 직접 수입해 국내 파트너사에 재판매하고 있다. 통지청은 2024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8월~2024년 8월까지 하드웨어(AI 컴퓨터 서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함께 구매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포트서비스 비용(미회수조건부 하자보증비용 포함)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지청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서포트서비스 비용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예고를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5년 5월 13일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Ⅲ. 당사자 주장

1. 청구법인 주장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권한을 구매한 비용(이하 '소프트웨어 대가'라 한다)은 관세의 부과 대상 또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함께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 접속해 소프트웨어·개발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비용으로서 수입되는 유체물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무형의 권리로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의 과세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수입신고가 필요 없으며 관세·부가가치세 부과대상도 아니라는 관세청 상담사례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의 기능 해제나 필수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특정 기능이 잠겨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한 인증키에 비용을 지급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09관0041)와는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 외에도 다양한 환경·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 플랫폼으로서 쟁점물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쟁점물품이 타사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필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의 구성 역시 쟁점물품의 운영체제나 필수 실행 프로그램(Base Command)과는

구분된다.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를 보더라도 쟁점 소프트웨어는 보안·라이프사이클 관리 등 운영지원·효율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소개될 뿐, 하드웨어의 기본 구동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 총판계약서에서 하드웨어,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소프트웨어, 서포트서비스는 별도의 제품으로 구분돼 있으며 하드웨어 구매 시 소프트웨어 구매를 의무화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설명서에서도 소프트웨어는 단독 구매, 다른 장비와 구매, 쟁점물품과 구매 모두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구매선택권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 소프트웨어 번들(Bundle) 또한 Base Command와 기타 소프트웨어를 묶은 판매 방식에 불과하며 Bundle 구성 자체가 반드시 하드웨어 구매조건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가격 구성표의 항목명 또는 'Support'라는 표기만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을 하자보증비용으로 오인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 과세전통지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상품 구성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간주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프트웨어 대가는 쟁점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도 아니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금액도 아니며 범용적 사용 가능성과 구매선택권이 인정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서포트 대가 및 하자보수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공제 요소에 해당한다. 서포트서비스 및 하자보수비용은 쟁점물품의 내재적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수입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후유지·지원서비스에 해당한다. 서포트서비스에는 로그파일 송수신 화면 사용권한, 기술지원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 후 설치·정비·유지비용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에 해당한다. ○○○ 비용 또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저장장치를 회수하지 않고 구매자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옵션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 이후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적 서비스이며 제품 자체의 고유기능 구현이나 수입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견적송장별 항목을 확인하면 실제 하자보증에 대응하는 비용은 별도로 존재하며 ○○○ 비용은 저장장치 회수 여부와 관련한 선택적 옵션임이 분명함에도 'Support'라는 표기를 이유로 하자보증비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총판계약서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포트는 각각 독립된 제품으로 구분돼 있고, 하드웨어 구매 시 서포트서비스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구매 사례에서도 서포트는 의무적으로 구매되는 항목이 아니며 최종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구매가 이뤄져 왔다. 서포트와 ○○○ 비용은 수입물품을 도입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아니고 수입 당시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도 아니며 수입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2. 통지청 주장

소프트웨어 비용은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비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한다.** ○○○ 시스템은 2022년 10월경 상품 구성이 변경되면서 하드웨어 시스템에 서포트가 포함되는 형태로 변경됐고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상품 구성에 포함됐으며, 쟁점 서포트서비스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대가로 인정하는 2022년 10월 이후의 ○○○ 시스템 내에 포함된 서포트서비스와 동일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지청이 실제지급가격으로 간주한 서포트서비스 비용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해 하자보증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과세전통지는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무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쟁점물품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될 수 없고 수입물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면 그 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봐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소프트웨어가 기계장치의 필수적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계의 일부로 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09관0041).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도 쟁점 소프트웨어는 AI 컴퓨터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의 견적서(Price List) 및 판매조건에서도 쟁점물품의 최초 구매시 일정 기간의 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쟁점물품 자체를 구매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만 별도 구매한 사례는 쟁점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상품의 구매로 확인되는 등 의무적 구매구조를 부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과 소프트웨어가 각각 제품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 역시 상품구조 및 기간·형태별 판매정책에 따라 구분된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 구매 시 소프트웨어 구매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이 쟁점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을 AI 서버로서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

로 구매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서포트서비스는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판매원가이고, 수입물품 판매조건에 따라 물품과 함께 주문해 지급한 하자보증비는 실제지급한 금액의 일부이므로 과세해야 한다. 쟁점물품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서포트서비스 및 ○○○ 비용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하자를 보증하는 상품에 해당하며 하드웨어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봐야 한다. 서포트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순 기술지원이나 사후 유지보수비용이 아니라 쟁점물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부품을 회수하고 교체해 주는 전형적인 하자보증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구매자는 쟁점물품 구매 시 해당 모델의 서포트상품을 의무적으로 함께 구매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 Price List의 거래조건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서포트상품은 '3년 제품 하자보증' 등으로 기재돼 있고 부품교환과 회수조건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어 본질적으로 판매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하자보증에 해당한다. 서포트의 하위 범주인 ○○○은 기본적인 부품회수 조건을 비회수 조건으로 변경하는 옵션에 불과하며 이러한 비용은 교체되는 부품의 회수 여부에 관한 조건 변경 대가로서 하자보증비용의 일종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격지원·기술지원서비스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가격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공제 가능하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서포트·○○○ 상품은 모두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체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며 이는 「관세평가협정」 제1조 해설(6.1)에서 규정한 판매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되는 하자보증비용에 해당한다. 쟁점물품 구매 시 서포트·○○○은 판매조건에 따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의무적 구성요소로서 수입물품 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봐야 한다.

3. 쟁점사항

① 소프트웨어 비용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서포트서비스 비용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과세전적부심 결정내용

청구법인은 미국 수출자의 국내 총판업체로 파트너사가 고객들로부터 물품 발주를 받아 청구법인에 송부하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을 주문해 수입하며 국내총판업체는 청구법인과 총 2곳으로 모두 동일 형태, 동일 조건으로 거래하며 다른 총판업체는 소프트웨어 비용과 하자(제품)보증비를 수입신고 시 모두 가산해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상품(하드웨어, 서포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가격 및 조건이 제시된 Price List를 제공받고, Price List에 따라 발주서(PO, Purchase Order)를 작성해 AI 컴퓨터 서버인 하드웨어 등 물품을 주문한다. 수출자는 PO 항목별로 주문된 상품에 대한 대금청구로서 견적송장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PI 청구금액을 일괄 송금한다. 이후 수출자는 판매물품의 공장 출고에 맞춰 청구법인에 AI 컴퓨터 서버인 하드웨어만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상업송장에 따라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키를 이메일로 수신하면 이를 파트너사와 고객사에 전달하며 최종 고객은 GPU Cloud에 접속해 라이선스키를 입력한 후 해당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 하드웨어를 구동한다.

Price List에는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자보증, 소프트웨어(보증, 업그레이드, 연장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가격 및 조건이 제시돼 있다. 수출자가 제시하는 Price List상 해당 모델의 거래조건으로 AI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의무적 bundle로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Base Command, AI Enterprise로서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및 이에 내장된 OS 프로그램 등을 구동해 서버 컴퓨터가 AI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이며 또한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해당 하드웨어 초기(initial) 구매 시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판매자는 해당 서버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다(초기 구매시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해당 서버컴퓨터를 구매할 수 없음). 일부(2022년 10월 이전 Price List 상품) 및 WS모델의 경우, 초기 구매 또는 매번 구매 시 하자보증은 의무적인 판매조건이며 판매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보증대상 모든 부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고, 구매자는 기본적인 하자보증 상품에 추가해 '모든 부품 비회수' 또는 '저장장치 비회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선택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법인 소속 기술이사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수입 프로세스 및 Price List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AI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모아 놓은 것으로,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구동을 위해 반드시 동시에 사용돼야 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Ⅲ 제7항 또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는 수입물품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제3자에게 행한 모든 지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총판계약서 및 Price List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의 **최초 구매 시 쟁점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함께 구매하도록 돼 있어 쟁점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선택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의무적으로 구입되는 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다(최초 구매 시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따라서 **쟁점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형태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판매조건으로 구입된 것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과세하는 것이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에 설치돼야 AI 연산기능 및 관리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는바, 쟁점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이 그 고유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A대학교 데이터 서버 사례는 쟁점 소프트웨어 설치 이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탑재되는 것으로서, 쟁점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도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쟁점 소프트웨어가 AI 컴퓨터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이며 쟁점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 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견적송장에도 쟁점물품과 쟁점 소프트웨어 가격이 함께 기재돼 있고, 청구법인은 그 기재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소프트웨어 비용은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지청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 과세전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포트서비스는 수입 이후 고성능 AI 컴퓨터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서 하자보증이 아닌 유지보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한 Price List 조건에 따라 쟁점물품과 쟁점 서포트상품을 함께 주문하고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 서포트상품은 쟁점물품 구매 시 의무적 판매조건으로 제시돼 구매자는 쟁점물품과 함께 반드시 이를 구매해야 하므로 쟁점 서포트비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서포트서비스 내용은 기본 3년 무상하자보증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서포트서비스 카탈로그에도 부품회수·교체절차, 보증기간 조건 등이 핵심

내용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서포트서비스 본질은 '하자보증'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도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쟁점 서포트상품을 제품하자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서포트서비스 상품은 쟁점물품과 구분돼 별도 상품으로 구성되다가 2022년 10월을 전후해 쟁점물품에 서포트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새로 소프트웨어 상품이 추가됐는바, 상품 구성에 따라 **별도 지급되던 서포트서비스 비용이 쟁점물품 대가에 포함돼 지급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쟁점 서포트서비스 비용은 쟁점물품과 관련성 있는 하자보증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품 하자보증 외에 수입 이후 기술지원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술지원서비스 내역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술지원은 부수적 기능으로 보이며 그 본질은 하자교정·부품교체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은 서포트서비스의 하위 옵션으로 하자부품 회수조건을 비회수조건으로 변경하는 하자보증옵션에 해당해 하자보증의 범위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서포트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통지청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 과세전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평석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역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학술적 정의에 비춰 볼 때 소프트웨어는 본체 물품이나 주변 장치에 특정 지시를 전달해 설계자가 의도한 고유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핵심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관세법」상 과세대상은 해당 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되는 유체물로 한정되므로 인터넷, 클라우드, OTA(Over-the-Air) 등 네트워크를 통해 무체물(용역·데이터) 형태만으로 송수신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거래 자체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소프트웨어 단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1] 다만, 소프트웨어가 무체물 상태로 유통되지 않고 USB, CD

등 물리적 저장매체에 수록돼 반입되거나 기계장치 내부 메모리에 물리적·전자적으로 탑재돼 수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가치는 무형자산 자체로서 독립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되는 저장매체 또는 기계장치의 가격에 합산해 과세가격 산정 기초에 포함시키는 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행 관세평가 체계로 동일한 기능과 가치를 지닌 소프트웨어도 어떠한 매체와 기술적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지(공급 방식의 유형)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수입물품 본체의 구동에 어떠한 기능적 필수성과 경제적 영향력을 갖는지(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역할)에 따라 과세 여부 및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법리적 경계선에 놓여 있다.

1. 소프트웨어 공급 방식의 유형별 관세평가 방법

1) 저장매체(USB, CD 등)에 수록돼 수입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기계 본체와 결합되지 않고 USB, CD 등 물리적 전달매체에 저장돼 단독으로 수입되는 거래에서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 자체와 유체물인 저장매체가 결합해 유통되는 법리적 특성이 존재한다. WTO 관세평가협정 Decision 4.1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 매체의 과세가격 산정 시 매체 자체의 가치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까지 포함해 합산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각 회원국의 자율적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은 소프트웨어 가격을 매체 가격과 분리하지 않고 합산해 전달매체 자체의 실제지급가격으로 평가하는 합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자가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유체물인 저장매체의 관세평가 금액 산정 기초에 직접 포함돼 과세 처리가 이뤄진다.

다만, **거래금액 내에 포함됐거나 사후에 지급되는 대가 중 사용권리의 허여 대가(로열티·권리사용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관세평가상 명확히 구분돼 비과세 판단을 받게 된다.** 수입 후 소프트웨어를 국내의 컴퓨터나 제어시스템에 설치·복제하거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비독점적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전달 매체(USB 등) 그 자체의 생산·제조

1) 2026년 3월 개최된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무형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의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디지털 무역 선도국들과 함께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모라토리엄의 장기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영구적 연장을 주장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인도, 브라질 등 주요 회원국 간의 이견이 최종까지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모라토리엄 연장에 대한 전체 합의 도출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유지돼 온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한 임시 무관세 관행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에 봉착했으나, 회원국들은 무체물 형태의 디지털 송수신에 대한 과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WTO 내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이나 거래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순 매체 수입 거래 자체는 성립될 수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관련성 및 판매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장매체 수록 소프트웨어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 실제지급가격으로 합산되는 단순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와 수입 후 복제·사용권리의 대가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사용료를 구별해 평가해야 한다.

2) 기계장치에 탑재되거나, 기계장치와 S/W가 수록된 USB가 함께 반입돼 소매용 세트물품(기계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기계장치 내부 메모리에 직접 내장돼 수입되거나 본체와 소프트웨어 수록 저장매체가 분리돼 반입됐음에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소매용 세트물품으로서 기계장치의 품목분류로 통합 분류되는 거래 형태에서는 물리적 물품과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과세단위로 결합해 평가된다. 이 경우 노트북의 기본 운영체제(OS)나 산업용 설비의 제어 펌웨어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계장치가 의도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물품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기능적 필수성을 지니게 된다. 이때 소프트웨어는 독립된 무형자산이나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수입물품 본체의 구동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기능적 구성요소로 작동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취득 대가는 수입물품 본체의 실제지급가격에 합산된다. 설령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가 담긴 USB 등의 매체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각각 포장 상태로 반입되더라도 특정 활동을 위해 하나의 세트로 조합·구성돼 재포장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기계장치의 HS 세번으로 분류된다면 저장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가치 역시 기계장치 본체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한편, 이 유형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Assist)' 쟁점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수입자가 기계 구동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거나 구매해 국외 제조자에게 무상 또는 감액된 가격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계장치 수입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인 물품(생산지원 제1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술·설계·엔지니어링(생산지원 제4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제1호)로 판단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기계장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반면, 기술·설계(제4호)로 본다면 국내 개발분은 비과세되고 국외 개발분에 한해서만 생산지원 가산요소로 처리되는 등 해석상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3) 당초에는 기계만 반입되고 수입 후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 라이선스키를 통해 인터넷 등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다운로드·탑재하는 경우

수입 당시에는 기계장치 내부의 특정 채널, 메모리 용량 또는 기능 회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위적으로 잠긴(Lock) 상태로 반입된 후 수입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키(License Key)나 활성화 코드(Activation Code)를 인터넷 등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수령해 해당 잠금을 해제하는 거래 형태에서는 무체물인 라이선스키 대가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핵심적인 관세평가 쟁점이 된다.

비록 **라이선스키 자체가 수입통관 이후 전자적 형태로 송수신되는 무체물 거래라 할지라도 해당 대가가 수입 당시에 잠겨 있던 기계장치 본래의 상위 기능을 활성화해 물품의 객관적·기능적 가치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 실제지급가격의 사후 추가지급금액(사후 조정금액)으로 평가된다.** 즉, 외형상으로는 수입 이후에 이뤄진 무형의 라이선스 계약일지라도 그 실질이 수입된 유체물 하드웨어의 미완성된 기능이나 효용을 완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돼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후 추가지급금액 산입 판단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은 **수입 후 지급되는 라이선스키 대가가 해당 하드웨어를 수입하기 위한 판매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해당 라이선스키 결제 없이는 당초 수입된 물품의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상 구매자에게 기능 개방을 위한 구매가 강제돼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 대가 결제 없이는 기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정상적 구동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이는 수입 거래의 일환으로 본다. 따라서 무체물로 수령한 인증키 대가라 할지라도 이미 통관이 완료된 하드웨어의 실제지급가격에 소급 적용 또는 추가 합산해 수정신고 및 과세 처리가 이뤄진다.

이러한 과세 평가는 물품 수입 단계에서의 과세 형평성 유지 법리와도 직결된다. 수입 시점부터 상위 기능 및 정밀 옵션이 모두 개방된 상태로 반입된 완전한 제품과 표준 하드웨어 기본 모델만 먼저 수입한 뒤 사후 소프트웨어 인증을 거쳐 동등한 상위 기능으로 전환·운용하는 제품 간에는 물품의 본질적·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 만약 사후 수령하는 라이선스키 대가를 무체물 거래라는 이유로 비과세 처리한다면 형태만 달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세당국은 수입 후 결제되는 라이선스키 및 활성화 대가를 하드웨어 본체의 과세가격 요소로 통합해 과세 허점을 차단하고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09관0041)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용량 기반 요금제(Pay Per Use)를 적용해 판매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삽입한 판매·유통 조건상의 통제 장치로서 수입 당시 이미 하드웨어 내부에 물리적·기술적으로 모든 기능이 구현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락(Lock) 및 별도의 라이선스키 지급 체계를 통해 사후 사용량이나 기능 확장 범위를 제어하는 구조를 취했다.[2] 이에 조세심판원은 수입자가 추가로 지급한 인증 비용은 하드웨어가 가진 잠재적 기능을 개방해 최종적인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완성하는 대가이며, 이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판매조건으로 수반된 것임이 판단되며 수입 이후 전자적 방식으로 라이선스키를 송수신해 결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입물품 하드웨어 본체의 과세가격에 소급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설사 수입 시점에 제공된 라이선스키가 50회의 사용 횟수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당 횟수를 소진한 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라이선스키를 사후적으로 추가 구매하도록 계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 대가는 기 수입된 하드웨어 장비 본체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수입된 하드웨어 장비는 사용 횟수의 제한이 걸려있을 뿐 그 하드웨어 자체는 50회 이상의 작동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잠재 용량을 완비하고 있다. 수입자가 50회 소진 후 추가로 지급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무체물 형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반입하는 대가가 아니라 장비가 가진 본래의 물리적 가치와 성능을 계속해서 가동·소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결합된 수입물품 실제지급가격의 사후 추가지급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자가 장비를 수입한 본래의 목적대로 지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후 인증키 구매계약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므로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판매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회당 사용료 명목이나 분할 구매 형태로 결제 금액이 나눠져 발생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수입물품 하드웨어 본체의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수입 당초 시점에 하드웨어 장비가 이미 완벽한 정품으로서 자체 고유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비된 상태로 반입되고 수입 이후 국외 공급자로부터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제공되는 영역이 단순한 버그 수정, 보안 패치, 성능 안정화 등 사후 유지보수(Maintenance) 서비스에 불과하거나 수입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독립적 추가 기능 소프트웨어인 거래 형태에서는 비과세 평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포함 요건상 수입 후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가가 수입물품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완성하거나 수입 거래를

2) 해당 사건은 수입 당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코드가 수입 후 추가로 반입돼 설치된 것이 아니며, 기계장치(장비) 수입 시점에 이미 그 내부 메모리나 시스템에 해당 기능 및 소프트웨어 전체가 내장된 상태로 입력돼 있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사용 형태나 계약 방식에 따라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로 납품한 후 구매자가 사후에 대가를 결제하고 받은 라이선스키(인증키/암호코드)를 입력함으로써 기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잠금(Lock)을 해제해 작동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적 판매조건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당초 수입된 하드웨어가 사후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추가 구매 없이도 지정된 본래의 용도와 핵심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 효용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수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순 유지보수 계약이나 사후 업데이트 대가는 유체물인 수입물품 그 자체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통관 이후 구동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입 후의 용역 및 서비스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수입 후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가 기존 하드웨어의 필수적 구동과 법적·실질적으로 결부되지 않고 수입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적 별매(Add-on) 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결제 대가는 하드웨어 수입 허용의 전제 조건이 아닌 단순한 국내 사용 단계에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 단독 구매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입 당시 하드웨어 본체의 기능적 완비성이 입증되고 사후 소프트웨어 대가의 계약상·기능적 독립성이 확보된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기 수입된 하드웨어의 가격에 합산해 소급 과세할 수 없으며 「관세법」상 무체물 단독 거래에 대한 비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2.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역할별 관세평가 방법

1)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물품이 고유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내장형 운영체제(OS)·제어 펌웨어나 최종 완성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으나 생산 공정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CAD 설계 프로그램, 자동화 설비 제어 및 출하 전 품질 테스트용 공정 프로그램 형태를 띤다.

관세평가상 쟁점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무체물(용역)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제4호)로 규명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제1호)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제2호)과 같은 유체물(Goods)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별 기준이다. 「관세법」상 무형의 기술·설계(제4호)는 국외에서 개발된 것에 한해 생산지원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무체물(전자적 전송)로 해외 제조사에 전달되면 비과세되는 반면, CD나 IC칩 등 유체물 매체에 수록해 제공되면 제1호(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물품)로 다뤄져 과세되는 법리적 불균형과 개발국가에 따른 과세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C-509/19 등)는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유·무형성이나 물리적 전달매체의 종류, 단순 개발국가 요건에 집착하기보다

는 하드웨어 구동 및 생산과의 기능적·경제적 불가분성(기능적 필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정해 하드웨어 작동에 필수 불가결한 소프트웨어라면 물품과 일체를 이루는 결합 구성요소(제1호)로 봐 생산지원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한다는 엄격한 과세 논리를 취하고 있다.

2) 수입물품 기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입물품 기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물품의 기본 구동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최저 요소는 아니지만 수입 이후 물품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거나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 확장·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그리고 수입 시점에는 전체 기능이 잠긴(Lock) 채 탑재돼 있다가 사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증키를 수령해 잠금을 해제(Activation)하는 라이선스 키(License Key) 형태로 구분된다. 관세평가상 본 유형은 생산지원(가산요소)의 관점보다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 본체의 실제지급가격(구매 대가 및 사후 추가지급금액)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된다.

수입 이후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키나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대가가 수입 당시 잠겨 있던 하드웨어의 잠재적 기능을 개방해 물품 본래의 객관적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조건으로 수반된 것이라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09관0041)의 법리와 같이 수입물품 하드웨어에 대한 사후 추가지급금액으로 봐 과세가격에 합산한다. 다만 구매자가 이러한 기능 향상 및 잠금 해제용 인증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특수한 거래 구조를 취할 경우에는 이를 생산지원 성격의 기술 제공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독자적 판매·유통 정책상의 통제 장치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밀한 계약 구조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예컨대 게임기(콘솔 및 핸드헬드 등)에 탑재되거나 함께 제공되는 게임 프로그램의 경우 하드웨어의 오락적 효용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수입물품 기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주된 기반을 두면서도 유통 방식과 구현 형태에 따라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겸비하는 복합적 구조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게임기 하드웨어 그 자체는 전원 조작, 시스템 설정, 기본 UI 구동을 담당하는 자체 펌웨어 및 운영체제(OS)만으로도 기계적·물리적 작동이 완료되므로 특정 게임 프로그램이 부재하더라도 하드웨어 본체의 기능적 불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게임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의 오락적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능 확장 및 부가가치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띤다.

이때 관세평가상 쟁점은 게임 프로그램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및 판매조건 판단이다. 특정 게임 프로그램이 게임기 내에 사전 탑재돼 단일 가격으로 수입되는 번들(Bundle)

형태는 해당 프로그램 가치가 수입물품 본체의 실제지급가격에 당연히 포함돼 과세된다. 반면 **수입 시점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지 않고 수입 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라이선스키 형태인 경우 사후 결제 대가가 하드웨어 매매의 필수적 판매조건에 해당해 사후 추가지급금액으로 합산될 것인지 아니면 수입 후 독립된 무체물 단독 구매 거래로서 비과세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관세평가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하드웨어와 게임 프로그램 간의 기능적 필수성 및 결합도 평가)** 해당 게임 프로그램 없이는 수입된 게임기 하드웨어가 제조자가 의도한 고유의 제품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가를 평가해야 한다. 범용 운영체제(OS)나 전용 시스템 펌웨어가 아닌 개별 게임 타이틀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게임기 하드웨어 자체의 구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제어 프로그램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게임기 본체에 다른 기본 기능이나 타 게임 실행 능력이 존재해 독립적 구동이 가능하다면, 해당 게임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의 고유기능 완성을 위한 '기능적 필수성(Functional Essentiality)'을 갖추지 못한 독립적 콘텐츠 거래로 해석돼 비과세 판단의 우월적 요소로 작용한다.

② **(매매계약 체결상 판매조건 해당 여부 검증)** 라이선스키 구입 및 다운로드 대가 지급이 하드웨어 본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수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피한 법적·실질적 구속력을 갖는지 검증해야 한다. 수입자가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해당 게임 라이선스 키를 의무적으로 함께 패키지로 결제해야만 하드웨어 수입이 이뤄지는 거래 구조라면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반면, 구매자가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벽히 보장돼 있고 게임 프로그램은 수입 이후 사용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구매·다운로드되는 구조라면 판매조건이 부정돼 과세가격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계약서 및 정산 구조상 대금의 가분성 및 결합 실질 확인)** 거래계약서, 견적송장 등에서 하드웨어 대금과 게임 프로그램 라이선스 대금이 계량적으로 분리 및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드웨어 가격과 소프트웨어 대가가 단일 합산가격(Lump-sum Price)으로 묶여 거래되거나 하드웨어 단가 할인 등의 명목으로 소프트웨어 대금이 간접 수수되는 구조라면 통합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입 계약상 두 거래가 엄격히 분리돼 있고 결제 경로 및 정산 주체가 독립돼 있으며, 사후 다운로드 대금이 하드웨어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독립된 제3자(게임 개발사 등)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라면 독립된 무체물 용역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전용 게임 콘솔이나 아케이드 장비와 같이 하드웨어가 특정 게임 전용으로 설계돼 해당 프로그램이 결합돼야만 비로소 완성품의 상품성이 형성되는 예외적 구조에서는 생산지원(Assist) 법리가 개입된다. 하드웨어 제조 단계에서 해외 생산자에게 게임 구동용 마스터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해 이를 반도체 칩 등에 내장해 수입할 경우, 이를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른 무형의 기술·설계로 봐 개발지 요건(국외 개발분만 가산)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C-509/19 등)와 같이 하드웨어 구동 및 상품성과 불가분하게 결합된 물품 형태의 구성요소(생산지원 제1호)로 취급해 개발국가와 무관하게 전액 과세가격에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상 해석 충돌이 발생한다. 결국 게임기와 게임 프로그램의 관세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이 갖는 기능적 필수성 및 계약상 판매조건 그리고 물리적 내장 여부에 따라 과세 법리와 가산요소 범위가 달라지는 복합적 평가체계를 형성한다.

3) 마케팅 목적의 소프트웨어

마케팅 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물리적·기능적 생산이나 하드웨어 자체의 기계적 성능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배제된 채, 주로 브랜드의 독자적 홍보, 마케팅, 광고 또는 소비자 사용 행태 분석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탑재되거나 연결되는 마케팅·광고용 플랫폼, 브랜드 로고 노출 프로그램,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온사이트 메시지 UI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관세평가상 본 유형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라는 직접적 생산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지원(제4호)으로 포섭해 가산할 법적 실익이 희박하다.

대부분 대금 결제가 수입 이후 지속적인 정기 구독료나 서비스 이용료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관 이후 독립적으로 발생한 순수 용역 대가(비과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수입물품 하드웨어를 수입·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만 하는 판매조건에 해당해 실제지급가격의 가산요소 또는 권리사용료로 포섭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세 판단의 경계선이 된다. 따라서 마케팅 소프트웨어는 수입 하드웨어 구매 계약과의 강제적 연계성 및 로열티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관세법」상 무체물 서비스 거래에 대한 기본 비과세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한 검토의견

1) 관세평가상 '판매조건'의 법적 개념과 적용 법리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 제1항(b)는 수입물품 거래에 조건 또는 사정이 결합된 경우를 규정하면서 (1)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

물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2)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3) 수입물품이 판매자에게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되는 반제품인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판매조건 개념은 수입물품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되는 법적·실질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본 과세전적부심사 사례와 같이 청구법인이 AI 컴퓨터 서버를 수입하기 위해 쟁점 소프트웨어 및 서포트서비스의 구매를 의무적으로 수반해야만 하는 거래 구조라면, 이는 이러한 예시 규정의 다른 물품(소프트웨어 등)의 의무적 동시 구매 조건에 정합하는 전형적인 판매조건에 해당한다. 관세평가 법리상 이러한 판매조건이 수입물품과 결부돼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다면 이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급금액 또는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합산해 제1방법(거래가격 적용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만일 해당 조건의 계량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1방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 기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본 사안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자보증 성격의 서포트 대가가 견적송장 등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산출되므로 소프트웨어이든 하자보증비용이든 불문하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참고로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 제1항(b) 첫 번째에서 언급한 예시에서는 판매조건으로 결합되는 대상이 물품이었지만, 관세평가상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결합되는 대상은 그것이 무형의 소프트웨어인지, 권리사용료인지 아니면 하자보증 등의 용역(Service)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관세평가 체계의 본질에 비춰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해당 지급이 수입물품 매매의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직접지급 역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물품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판매조건을 내포하고 있으며, 간접지급 또한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Ⅲ에서 명시하듯 판매조건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나아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법정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 역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판매조건을 엄격한 과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적 관점에서 본 사건을 재조명하면,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사안은 수입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결합된 판매조건의 대상이 단지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하자보증 용역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수입 통관 이후 인터넷망을 통해 다운로드됐다는 외형적 전송방식에만 집착할 경우, 마치 독립된 무체물 소프트웨어에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오인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세평가의 본질상 과세

여부는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전송방식이라는 반입경로가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구속력이라는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의 핵심은 비과세 대상인 무체물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독자적 과세가 아니라 수입 하드웨어의 매매를 가능하게 만든 필수적 판매조건으로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정당한 과세대상 대가를 수입물품 본체의 과세가격에 올바르게 합산해 평가하는 데 있다.

2) 쟁점 소프트웨어의 AI 하드웨어 운용상 기능적 필수성

수입물품인 AI 컴퓨터 서버는 단순한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니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연산 노드 및 정밀한 병렬 처리 구조가 최적화돼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컴퓨팅 장비다. 쟁점 소프트웨어(Base Command, AI Enterprise 등)는 단순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임의적 선택 옵션이 아니라, 수입물품 하드웨어에 내장된 운영체제(OS) 및 제어 알고리즘과 직접 결합해 AI 연산 및 관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동 플랫폼이다. 법적·학술적 정의상 소프트웨어가 장비의 고유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으로 기능할 때 이는 물품의 구동을 완성하는 실질적 구성요소로 평가받는다.

본 사안에서 쟁점 소프트웨어가 결여될 경우 AI 서버 하드웨어는 제조자가 의도한 고유의 초고성능 연산 기능 및 시스템 제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단순한 미완성 구조물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쟁점 소프트웨어는 수입물품 하드웨어와 객관적·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기능적 필수성(Functional Essentiality)을 완벽히 충족하므로 해당 하드웨어가 지닌 객관적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완성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수입물품 본체의 과세가격 산정 기초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타당성을 갖춘다.**

3) 라이선스키 및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의 본질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관세의 과세대상은 관세영역을 통과해 수입되는 유체물로 엄격히 한정되므로,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전자적 유통 경로를 통해 단독으로 수신되는 무형의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 또는 라이선스키 그 자체는 물리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무체물로서 수입신고대상 및 독자적인 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통관 완료 후 이메일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라이선스키를 수령하고 GPU 클라우드나 원격 서버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실행하는 후속 이행 과정은 당초 수입된 하드웨어 본체의 성능을 완성하고 예정된 고유기능을 개방·구동하기 위해 선택된 단순한 기술적 제공 또는 전달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국제무역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수입물품 본체와 물리적으로 통합돼 내장돼 오거나 CD-ROM, 반도체 IC칩, USB 등 형태를 갖춘 유체물 저장매체에 수록돼 하드웨어와 함께 반입되는 물류 형태를 취했다. 반면,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물리적 매체 제작 및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용과 시간적 지연을 절감하기 위해 제공 매체만 전자적 송수신 및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전환됐을 뿐이다. 이러한 **전달 방식의 기술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수입 하드웨어 본체의 핵심적 연산 및 제어 기능을 작동시키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능하며 하드웨어 매매계약 체결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판매조건으로 결부돼 있다는 경제적·법적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임에도 단지 유체물 매체(USB 등)에 담겨 수입됐는가 아니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됐는가라는 외부적 전달 경로 차이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실질과세 원칙과 관세평가의 중립성 및 형평성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전자적 다운로드 및 사후 라이선스키 발급 방식은 본질적으로 수입 하드웨어 가치를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한 물리적 배송 체계의 현대적 대체 형태에 해당하므로 수입 당시 물리적 매체 형태로 통과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를 비과세 대상인 무체물 용역 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결제 대가는 기 수입된 하드웨어 본체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평가하는 것이 관세평가 법리의 실질에 부합한다.

Ⅴ. 맺는말

현대 ICT 기술의 고도화와 AI 컴퓨팅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방식을 물리적 저장매체(CD, USB 등) 수록 형태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키 발급 등 무체물 형태의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유통 구조의 변화는 유체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 관세평가 체계에 새로운 법리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여전히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세평가협정」 법리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소프트웨어가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돼 관세영역을 직접 통과하지 않는 무체물이라 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수입 하드웨어 본체의 고유한 연산·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기능적 필수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용역이 아닌 수입물품의 가치를 완성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봐야 한다. 수입 후 라이선스키를 입력하거나 클라우드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하는 과정은 과거 물리적 매체에 담겨 들여오던 유통 체계가 기술 발전에 따라 현대화된 단순한 전달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며 하드웨어 본체의 성능을 완성한다는 법적·경제적 실질은 변함이 없다.

둘째, 수입자가 소프트웨어 대가나 하자보증 성격의 서포트 대가를 별도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해당 구매가 수입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드웨어를 수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 하드웨어 본체의 실제지급가격에 산입돼 과세가격 산정 기초에 가산돼야 한다.

셋째, 관세평가상 소프트웨어 거래는 그 역할과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별돼 적용돼야 한다. 하드웨어의 구동 및 잠재적 기능을 개방·완성하는 기능 확장 및 라이선스키 개방 구조(조심 2009관0041 및 과세전적부심 2025-16 사례)나 사용량 기반(Pay Per Use) 제어 체계는 과세 타당성이 입증된다. 반면, 수입 시점에 하드웨어가 완벽한 정품으로서 고유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공되는 수입 후의 단순 버그 수정·사후 유지보수대가나 수입 하드웨어 구매와 강제적 연계성이 없는 마케팅 목적의 독립적 소프트웨어 대가는 수입 후 용역 대가 및 독립적 무체물 거래로서 비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결국,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을 취하는 소프트웨어의 관세평가는 수입 당시 물리적 매체 반입 여부라는 형식적 외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구동에 갖는 기능적 필수성, ② 구매 계약상 수반되는 판매조건성, ③ 수입물품 대금과의 직접적 결합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지급가격 산입 여부를 정밀하게 판정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과세 법리다.

맥아당이 주성분인 당시럽의 HS Code
기타의 당vs.맥아당시럽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설탕은 '자당'이라는 당류로 이뤄져 있다. 그렇다면 '맥아당'은 어떤 당일까?

맥아당(Maltose, 말토스)은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이당류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맥아(Mal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맥아당은 설탕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단맛을 내며 식품의 감미료나 시럽, 제과제빵용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옥수수·쌀·밀 등 전분을 함유한 원료를 효소 등을 이용해 분해한 후 맥아당을 생성하고 이를 농축한 맥아당시럽을 널리 사용한다.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출처: AI 생성 이미지)

일반적으로 당류는 제17류에 분류된다.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맥아당시럽은 제1702호 '기타당류, 당시럽, 인조꿀, 캐러멜당'으로 분류된다.

또한, 시럽 내에 포도당이나 과당이 어느 정도 비율로 혼합돼 있는지에 따라 제1702.30호(과당 20% 미만), 제1702.40호(과당 20% 이상 50% 미만), 제1702.60호(과당 50% 초과), 제1702.90호(기타 당) 등으로 분류된다.

다음 사례를 통해 맥아당시럽의 품목분류를 알아보자.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효소로 당화한 후 여과·농축해 조제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시럽으로 '기타의 당'에 해당하는 제1702.90-9000호로 신고했다.

제1702호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당시럽'에 관해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분석 결과 건조 기준 포도당 약 8%, 맥아당 함량이 약 38%인 당시럽으로 맥아당이 주 성분인 맥아당시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1)]

따라서, 본 물품을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맥아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당시럽으로 봐 제1702.90-300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CORN SYRUP	제1702.90-9000호 FCN1 7.2%	Maltose syrup	제1702.90-3000호 FCN1 8%

1) 문헌에서 알려진 맥아당시럽의 맥아당 함량은 약 28~49%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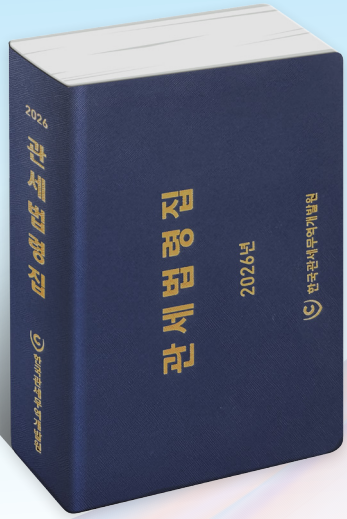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